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윤후덕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478

발의연월일: 2020. 11. 18.

발 의 자:윤후덕·오영환·송갑석

김정호 · 박 정 · 고용진

권인숙 · 우원식 · 김홍걸

양정숙 • 이규민 • 이광재

양향자 · 서삼석 의원

(14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성폭력·가정폭력·성매매 등을 예방·방지하고 그 피해 자를 보호·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을 두고 있음.

그런데 불법영상물 삭제지원 등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사업이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업무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디지털성범죄로 피해자를 입은 사람에 대한 적극적 지원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업무에 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3에 따른 촬영물등의 삭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(안 제46조의2제5항제7호 신설).

법률 제 호

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양성평등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6조의2제5항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제8호 및 제9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항 제8호(종전의 제7호) 중 "제6호"를 "제7호"로 한다.

7. 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촬영물등의 삭제 지원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6조의2(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	제46조의2(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
설립 등) ① ~ ④ (생 략)	설립 등) ① ~ ④ (현행과 같
	<u>о</u>)
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다음	5
각 호의 사업을 한다.	
1. ~ 6. (생 략)	1. ~ 6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7. 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
	등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3제
	1항에 따른 촬영물등의 삭제
	<u>지원</u>
<u>7.</u> 제1호부터 <u>제6호</u> 까지의 사업	<u>৪.</u> <u>শ্বিত</u>
에 부수되는 사업 또는 이와	
관련하여 국가기관등으로부	
터 위탁받은 사업	
<u>8.</u> (생 략)	<u>9.</u> (현행 제8호와 같음)
⑥ ~ ⑧ (생 략)	⑥ ~ ⑧ (현행과 같음)